

# 중소기업 기준

- ① 업종별 규모기준 :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- ② 상한기준 :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일 것

##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6. 가구 제조업	C32	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	
8. 광업	B	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
10. 담배 제조업	C12	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22. 수도업	E36		
23. 건설업	F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
25. 음료 제조업	C11	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	
32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	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(N76 제외)	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금융 및 보험업	K		
42. 부동산업	L		
43. 임대업	N76		
44. 교육 서비스업	P		

\*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## 정의 및 지정요건

□ 기술·지식을 기반으로 혁신·고성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3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(벤처특별법, 중기부 고시)

유 형	확인요건	기술성·사업성 평가기관	확인기관 (벤처확인증 발급처)
① 벤처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벤처투자기관*이 자본금의 10%** 이상 &amp; 5천만원 이상 투자</li> <li>* (투자기관) 창투자(조합)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일반은행, 개인투자조합, 사모투자전문회사</li> <li>**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%(‘07.4.23시행)</li> </ul>	-	벤처 캐피탈협회
② 기술평가 보증·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보 보증·중진공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&amp; 총자산액 대비 5% 이상</li> <li>* (창업 1년 이내) 4천만원 이상,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</li> <li>** 보증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</li> <li>○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점 이상, 기술성부문 31점(예비벤처 24점) 이상</li> <li>*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</li> </ul>	기보, 중진공	기보, 중진공
③ 연구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업부설연구소 보유</li> <li>○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&amp; 총매출액의 5~10% 이상</li> <li>*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</li> <li>○ 사업성평가 우수</li> </ul>	기보, 중진공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ICE평가정보(주) (주)웍스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 (주)크레더블	기보, 중진공

# 기술인증 획득기업

대상	인정 기간	비고
가.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* 인증기업	유효 기간	* NET (New Excellent Technology, 신기술) :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
나.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* 인증기업		* NEP (New Excellent Product, 신제품)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
다.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(GR*마크)인증기업		*GR (Good Recycled Product)
라.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		
마.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* 마크인증기업		* GH [Goods of Health Mark] :식품.약품.화장품.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
바.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*기업		*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